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26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분 재산세 2,480,210원, 지방교육세 496,050원, 2014년도 분 재산세 2,740,540원, 지방교육세 548,110원, 2015년도 분 재산세 3,736,120원, 지방교육세 747,220원, 2016년도 분 재산세 3,520,900원, 지방교육세 70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9. 7.부터 2017. 7. 20.까지 [redacted]시 B 전 3,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1].

나. 피고는 2017. 2.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였음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3. 10. 원고에게 재산세 등 합계 16,967,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건축물 및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653㎡가 1년 9개월 동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위 1,653㎡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율로 산출하여, 2017. 4.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별도합산과세된 부분을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처분'이라 한다).

<table>
<tr><th>해당연도</th><th>최초 부과고지</th><th></th><th>2017. 3.10.부과고지</th><th></th><th>최종(2017. 4.13. 부과고지)</th></tr>
<tr><td>2013</td><td rowspan="4">분리과세대상 토지</td><td rowspan="4">⇒</td><td rowspan="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td><td rowspan="2">⇒</td><td rowspan="2">3,591㎡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 확인된 1,653㎡를 별도합산과세대상, 1,93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td></tr>
<tr><td>2014</td></tr>
<tr><td>2015</td><td rowspan="2">⇒</td><td rowspan="2">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td></tr>
<tr><td>2016</td></tr>
</table>

1) 그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는 화성시 B 전 1649㎡가 남아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 소나무 30그루가 심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년도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등 참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7,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내지 2016. 6. 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2013년, 2014년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처분을 받은 토지 부분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잡목이 있었음이 확인될 뿐이며, 그 이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에는 위와 같은 건물이 있던 부분은 나대지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잡초와 잡목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원고 역시도 2010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개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뒤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30여 그루만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2017. 2. 작성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④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농지에 준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유형의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2017. 3.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구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수시로 이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통상 이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과세기준일이 가장 이른 처분의 과세기준일은 2013. 6. 1.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인 2017. 4. 13.은 위 2013.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2013년도 내지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2]를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2)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처분 부분을 제외한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정세진

판사 강정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다.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제115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이하 생략)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 · 답 · 과수원

가. 전 · 답 ·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하 생략)

○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